

2003. 11. .

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

검 토 보 고 서

(건 설 과 소 관)

1. 계룡시지명위원회조례안
2. 계룡시부실공사방지조례안
3. 계룡시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
4. 계룡시수방단운영조례안
5. 계룡시재난관리기금운용·관리조례안
6. 계룡시재해대책기금운용·관리조례안
7. 계룡시재해대책본부운영등에관한조례안
8. 계룡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
9. 계룡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
10. 계룡시하수종말처리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

전문위원 김 세 현

계룡시지명위원회조례안

□ 검토의견

- 측량법 제58조와 동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되는 지명위원회의 기능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운영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,
- 지명은 우리만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후대에까지 널리 사용되는 것임을 감안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지명 찾기에 많은 노력이 요구됨.

계룡시부실공사방지조례안

□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 시행하는 각종 공사의 효율적인 추진과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부실공사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.

계룡시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

□ 검토의견

- 도로법 제54조의 6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에 다른도로, 통로, 기타 시설을 연결하고자 하는 경우의 허가기준, 절차, 설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 운영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계룡시수방단운영조례안

□ 검토의견

-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안의 재해 예측과 예찰 등 재해 응급대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수방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상위 관련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계룡시 재난관리기금운용 · 관리조례안

□ 검토의견

- 재난관리법 제56조와 제5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적립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·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기금운용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계룡시재해대책기금운용 · 관리조례안

□ 검토의견

-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하는 재해대책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운영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계룡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

☐ 검토의견

- 자연재해대책법 제11조와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재해대책본부의 구성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조례운영상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계룡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

☐ 검토의견

- 지방재정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공공 하수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자금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계룡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

□ 검토의견

- 본 조례 역시 지방재정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상수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계룡시하수종말처리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

□ 검토의견

- 하수도법 제7조 제3항과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종말처리 시설에 대한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